종교인과세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식*

오랫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실무적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하여 원천징수시의 소득 유형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가지도록 하고, 소속 종교인 모두에게 동일한 유형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둘째, 원천징수 시 적용한 소득 유형을 연말정산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적용한 소득 유형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셋째,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한다.

넷째,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의 유형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적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다섯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주택자금대여이익과 월세지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신설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택을 제공받는 종교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여섯째, 소속 종교인 이외의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 필요경비를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최대 80%)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80%)을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종교단체들은 평소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과세당국 또한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여덟째, 각 종교단체마다 활동하는 매우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종교인, 종교인소득, 종교인과세, 종교관련종사자, 성직자, 근로소득, 기타소득

*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부 세무학전공

Ⅰ. 서론

오랫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종교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유형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각 소득들마다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종전의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종전 소득세법에 의해서도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측(이하 '과세론자'라 함)에서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김광윤, 2013: 박경준, 2013: 박중영, 2015: 박승식, 박상연, 2015). 이에 반해 종전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측(이하 '과세불가론자'라 함)에서는 종교인은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2)]

따라서 과세론자들은 과세당국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였고(박중영, 2015), 나아가 설령 종교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종교인의 소득을 지칭하는 새로운 소득유형을 소득세법에 신설해서라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3)]

이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2015년말 소득세법 개정이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는 종교인의 사례비나 수당 등과 같은 일상적인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결국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의 선택권은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게 맡긴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즉,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하였다.

이러한 종교인 과세를 불과 반년 정도 남겨둔 2017년 중반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2년 더 미루어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4)]

본 연구는 이렇게 제도 시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여 법령이 제정되었고 아직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시점에서 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다소 성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제도를 시행하

---

2) 크리스천투데이 (2006. 2006.06.07. 09:00), 종교인은 근로자인가… 납세문제 지면논쟁.
3) 동아닷컴 (2014-01-17, 15:14), 당정: 세법에 '종교인 소득' 신설… 소득공제혜택 추진.
4) 연합뉴스 (2017/08/09 18:51),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오히려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으로 여겨져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Ⅱ. 현행[5] 종교인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2.1 현행 종교인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관련종사자[6]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정의하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둘째,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퇴직소득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켰다.

세째, 근로소득에 대해서 허용하는 일부 비과세소득 항목들(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필요경비는 종교인소득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더 클 경우 그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원천징수를 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20%로 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반기별납부제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상시고용인원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종교인소득도 다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되, 다만 종교인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7]

아홉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다만,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5) 본 연구에서 '현행 소득세법' 또는 '현행 종교인 과세제도'와 같이 '현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말한다.

6)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지칭할 때는 '종교인소득'이라 표현하고, 종교인을 지칭할 때는 '종교관련종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두 용어는 동의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세법 조문을 인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할 예정이다.

7)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열째, 종교인소득과 관련한 세무조사 시에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종교인의 범위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을 종교관련종사자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1)에 의하면 종교인 즉, 종교관련종사자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표준직업분류[8]에서 종교관련종사자를 찾아보면, 종교관련종사자는 크게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종사자'로 구분되고, 성직자는 다시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직업예시: 대종교 및 유교의 전교)로 구분되며, 기타 종교관련종사자는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종사자(직업예시: 포교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종교인 즉, 종교관련종사자란 목사, 신부, 승려, 교무, 전교 등의 성직자와 수녀, 수사, 전도사, 포교사 등의 기타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고 하겠다.

2.3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분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종교인소득과 종교인의 퇴직소득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2.3.1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9]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를 말한다.[10] 따라서 종교인이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 등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 과세대상 종교인소득이며, 신도와 같은 개인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일단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제26호로 신설하였다. 즉,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되, 그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3.2 퇴직소득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11] 종교인 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

---

8)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참조.
9)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10)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
1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 제4호.

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에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제4호로 신설하였다.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다.

한편,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종교인소득에 포함된다.[12)]

2.4 비과세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13)]

1)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14)]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15)]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②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다음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16)]
①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③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

1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5항.
1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아목. 본 조항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적용하는 비과세소득이며, 만약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소득들 중에서 종교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과세소득들을 거의 대부분 추출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금, 벽지수당, 주택자금 대여이익 등의 비과세소득이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만 기타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 차이는 있다.
14)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15)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16)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17]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2.5 세액의 계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교관련종사자의 기타소득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8]

<표 1>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주)

총수입금액(= 종교인이 받은 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2,000만원 이하	종교인이 받은 금액 ×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600만원 +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30%
6,000만원 초과	3,200만원 +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

㈜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이 표에 의한 금액과 실제 소요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한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교관련종사자의 근로소득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경우가 없으며, 일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7)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18)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호.

<표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총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보면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근로소득공제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종교인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대입하여 양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근로소득공제'와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 비교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A)	근로소득공제(B)	차이 (C=A-B)
1,000만원	800만원	550만원	25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825만원	775만원
3,000만원	2,100만원	975만원	1,125만원
4,000만원	2,600만원	1,125만원	1,475만원
5,000만원	2,900만원	1,225만원	1,675만원
6,000만원	3,200만원	1,275만원	1,925만원
7,000만원	3,400만원	1,325만원	2,075만원
8,000만원	3,600만원	1,375만원	2,225만원
9,000만원	3,800만원	1,425만원	2,375만원
1억원	4,000만원	1,575만원	2,425만원
1억5,000만원	5,000만원	1,675만원	3,325만원
2억원	6,000만원	1,775만원	4,225만원

<표 3>에 의하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이 커질수록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80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550만원에 비하여 250만원이 많았으나,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차이가 775만원,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차이가 1,675만원, 1억원인 경우에는 2,425만원, 2억원인 경우에는 4,225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만 보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소득금액 계산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 이러한 판단은 옳을 것이고, 특히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 계산과정은 소득금액 계산 이후에도 각종 소득공제를 공제하고, 세율을 곱하며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각종 소득공제나 공제감면세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소득공제 중에서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세액공제 중에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중 일정한 저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 비하여 세부담 측면에서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 종교인의 소득의 크기,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과 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 여부 및 그 금액 등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동일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매년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19] 그러므로 종교인은 매년마다 자신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소득세액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2.6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2.6.1 원천징수의무의 비강제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20], 연금소득, 기타소득[21], 퇴직소득[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23]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 따라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만 의할 경우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든 근로소득으로 보든 어느 경우에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55조의6에서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용하고, 대신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2.6.2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제4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25]에 따라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12[26]를 곱한 금액에서 필요경비[27]를 공제하고,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

---

19) 연합뉴스 (2015/12/23 13:48), <세법시행령> 종교인 세부담, 근로자보다 낮을 듯(종합).
20) 일정한 근로소득은 제외.
21) 일정한 기타소득은 제외하는데, 종교인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22) 앞의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4) 현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25)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2월 이후에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남은 개월 수를 적용한다.
27)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함.

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종교인소득의 크기에 따라 체감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연간 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에 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할 수 있다.[28]

2.6.3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9]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30]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항들을 준용한다.[31]

2.6.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32]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반기별납부'라 한다. 이 때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33]

이러한 원천징수세액의 매월 납부 또는 반기별납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적용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 종교관련종사자의 인원수를 제외한다.[34] 대형 종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에서는 종교관련종사자 수를 제외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결국 대형 종교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7 선택적 분리과세

대부분의 기타소득 항목들은 다른 소득들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종교인소득도 다른

---

28) 현행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4항 후단.
29)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30)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4 제1항
31)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4 제2항.
32)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33)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1항.
34)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2항.

대부분의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 한다.[35]

2.8 신고납부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36]

2.9 질문 · 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37]

Ⅲ. 현행 종교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소득 유형의 선택권과 관련한 문제

3.1.1 실질과세의 위배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령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도록 하되, 그 선택을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론자의 주장과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종전 소득세법으로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과세불가론자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과세론자와 과세불가론자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형태의 현행 소득세법의 결론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어떤 소득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그 소득의 실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어떤 소득이 두 가지 소득 유형의 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소득 유형을 따라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결정은 어느 소득 유형의 실질에 더 부합하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종교단체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종교인에게 선택을 맡김으로써 실질에 따른 과세보다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과세론자와 과세불가론자의 주장 중 어느 한 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35)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36)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4의2호.
37) 소득세법 제170조.

입법과정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현행 조세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 하겠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경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종교인소득의 소득 유형 선택권을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에게 부여한 현행 제도는 실질과세의 위배가능성 이외에도 몇 가지 실무상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1.2 원천징수 시의 소득 유형 결정권자

먼저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 유형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천징수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시의 소득 유형 결정 역시 종교단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8)]

그러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서, 납부되는 소득세의 귀속 주체는 지급받는 자 즉, 종교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인 종교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종교인 스스로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자신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 시의 소득 유형 결정은 종교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속 종교인마다 소득 유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 여부까지 소속 종교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또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시의 소득 유형은 종교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소속 종교인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현행 소득세법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 시행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1.3 원천징수 시 적용한 소득 유형의 변경가능성

매월의 원천징수 시에 적용한 소득 유형을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이나 5월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우선 원천징수 시에 적용한 소득 유형을 다음 해 2월의 연말정산 시에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일단 종교단체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시에 적용한 소득 유형을 연말정산 시에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말정산도 넓은 의미에서 원천징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38) 이천화 외(2016)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종교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 종교인이 둘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받으면서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하고 또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이를 연말정산 시에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을 하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대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종교인이 스스로 양자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에 합산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합산할 경우 누진세율 등의 영향으로 납부할 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교인소득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또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연말정산 시에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시에 적용한 소득 유형을 5월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득세신고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신고가 바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모든 종류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는 물론 소득 유형의 수정까지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소득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면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또는 둘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각각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을 때 어떤 소득을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이러한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시행 전에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시행 초기부터 발생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1.4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는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하나의 소득 유형만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을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분류해 두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천징수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한 종교인의 모든 종교인소득을 하나의 소득 유형으로만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을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받는데, 양자 모두 가장 높은 비율(70%, 80%)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받게 되므로 단일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일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하므로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 적용하는 종교인소득 필요경비율이 근로소득공제율에 비하여 크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높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그것대로 적용받고,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으면서, 나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까지 지급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셋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악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특성상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분리과세제도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소득의 경우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요, 제도의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은 한 가지 소득 유형으로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당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이를 합산하여 종교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소득으로만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1.5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의 유형을 매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 매년 다른 소득 유형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이 큰 연도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연도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매년 소득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종교인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제도는 종교인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과 종교인소득도 근로소득이라는 과세론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내어놓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인 스스로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자신의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종교인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이다. 매년 소득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오직 종교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모든 종교인은 자신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하고, 한 번 결정한 유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한 가지 유형을 평생동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여겨진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소득 유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일단 면세를 포기한 후에는 3년 동안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39]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소득 유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세액계산 방식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연구자의 견해로는 3년이나 5년 정도로는 그 기간이 짧지 않을까 생각된다.

3.2 사택 제공 이익과 관련한 문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40] 여기서 사택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41] 이러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는 근로소득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42] 따라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하는 것은 많은 종교단체에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이를 종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제도로 여겨진다.

문제는 주택자금대여이익과 월세지원액이다. 먼저 주택자금대여이익부터 살펴보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인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비과세한다.[43]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가 사택을 보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지 않더라도, 종업원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가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그 이익을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에는 이러한 주택자금대여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택을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교인들에게 제공하는 종교단체도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종교단체도 많다. 또한 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일부 종교인에 대해서는 사택을 제공하지만 다른 종교인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자금대여이익을 비과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월세지원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실적으로 소속 종교인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없는 종교단체들에서는 종교인의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종교인 중 일부는 자금이 부족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차하기가 어렵고, 또 한 지역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손쉽게 구하는 주택이 바로 월세주택이다.[44]

---

39) 부가가치세법 제28조.
4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5).
4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4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하지 않는다.
4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44) 한 지역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종교인의 경우 자금문제가 없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종교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소속 종교인이 월세로 주택을 구할 경우 그 월세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원하는 월세지원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월세지원액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45]

이에 비하여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물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까지 적용해 줄 수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은 비과세하면서 월세지원액은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사택을 제공받는 종교인과 월세를 지원받는 종교인 간에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사택을 제공받는 종교인보다 월세를 지원받는 종교인이 종교단체 내에서의 위치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을 것인데, 비과세혜택은 오히려 사택을 제공받는 종교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때 적정한 수준의 월세지원액을 비과세하도록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3 소속 종교인 이외의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문제

소득세법 제202조 제4항에서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의 매월의 원천징수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대상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속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부흥회 등을 집전하고 가는 부흥강사나 특강 강사로 오는 종교인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때에는 ①연간 환산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②일률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방식① 이나 방식② 모두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이지만, 지급하는 사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방식①에 의하면 80%보다 낮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46] 따라서 소속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닌 종교인의 일시적 활동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원천징수 방식을 방식①에 의하는지 방식②에 의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3.4 질문 · 조사에 관련된 문제

앞에서 보았듯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45)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며, 월세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Min.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 750만원] × 10%

46) 이렇게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다른 금액의 필요경비가 계산될 경우, 그 영향으로 나중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종교인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7)]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이러한 질문 · 조사권의 제한 원칙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에 따라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여러 가지 계정과목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정과목에 대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종교단체의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지출 뿐 아니라 수입까지도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종교인과세를 반대해 온 이유 중에는 종교인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종교단체의 재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권혁률, 2017). 그러나 과세를 하는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세무조사를 한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각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평소부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세무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세당국 역시 어렵게 시행하는 종교인과세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종교인과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들이 과세당국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48)]

3.5 종교인의 범위 관련 문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의 과세대상 종교인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종교관련종사자를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종사자’로 구분하고, 성직자는 다시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로 구분하고 기타 종교관련종사자는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성직자’에는 ‘전교(대종교 및 유교)’를 예시하고 있고, ‘그 외 종교관련종사자’에는 ‘포교사’를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할 경우 각종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형태의 종교관련종사자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선교사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교사의 경우 불교

---

47) 소득세법 제170조.

48) 모 교회의 장로는 특히 “이단이나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탈세 제보나 투서를 할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은 제보가 있을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고, 수정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또 근거없는 투서나 제보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화해주길 당부했다.(노컷뉴스, 2017.09.05., 4개월 앞둔 종교인 과세…일선 목회자들의 생각은?, http://www.nocutnews.co.kr/news/4842098)

의 포교사[49]와 같은 활동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종교관련종사자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사'의 경우 그 업무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의 경우 실제로 신앙을 선교하고 종교의식과 관련된 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종교관련종사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종교단체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만 전업으로 하는 간사의 경우 비록 명칭이 간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간사라 하더라도 행정업무 이외에 종교의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보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활동을 분석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50]

각 종교마다 매우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종교활동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또 이를 종교단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오랫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강제화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종교인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과세불가론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절묘한 해법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소득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 유형을 다르게 적용하는 예는 현행 조세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방식일 뿐 아니라,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실무적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현행 소득세법령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천징수시의 소득 유형 결정권자가 종교인인지 종교단체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종교인이지만 실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소속 종교인 모두에게 동일한 유형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원천징수 시 적용한 소득 유형을 연말정산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연말정산 시 적용한 소득 유형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궁극적인 납세의무자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소득 유형의 최종결정권도 종교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로 신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허용할 경우 기타소득으로서의 높은 필요경비율 혜택과 함께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9) 다음Tip에서는 포교사를 "불교 교리를 전하는 불교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선교사나 기독선교단체의 간사들은 포교사에 준하는 자로서 종교관련종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 행정직원은 이번에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의 기타소득 적용대상이 아니다.(최호윤, 2016)

넷째, 한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의 유형은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적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종교인으로 하여금 소득 유형을 빈번하게 변경해 가면서 소득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에도 주택자금대여이익과 월세지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신설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택을 제공받는 종교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여섯째, 소속 종교인 이외의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 필요경비를 종교인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최대 80%)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80%)을 적용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세무조사 시 질문 · 조사가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무조사는 어렵다는 사실을 종교단체들이 인지하고 평소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과세당국 역시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각 종교마다 활동하는 매우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을 주로 현행 소득세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면 더욱 많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과세당국과 각 종교단체들은 이 문제를 두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어렵게 시행하게 된 종교인과세가 처음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권혁률 (2017), 종교인 과세, 또 다시 2년 연기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705, 104-113.

김광윤 (2013),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KERI 칼럼, 2013(11), 1-2.

박경준 (2013),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대각사상, 20(0), 361-383.

박승식, 박상연 (2016),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31(2), 371-389.

박중영 (2015),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 기타소득 과세에 따른 조세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45(0), 147-171.

이천화, 박성욱, 김영훈 (2016),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4(3), 359-386.

최호윤 (2016), 종교인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활천, 750(5), 22-25.

노컷뉴스 (2017.09.05. 14:54), 4개월 앞둔 종교인 과세...일선 목회자들의 생각은?, http://www.nocutnews.co.kr/news/4842098

다음팁 (2009.03.12. 17:19), 선교사와 전도사와 포교사의 차이를 말해주세요, http://tip.daum.net/question/55840693?q=%EC%84%A0%EA%B5%90%EC%82%AC+%ED%8F%AC%EA%B5%90%EC%82%AC

동아닷컴 (2014-01-17, 15:14), 당정: 세법에 '종교인 소득' 신설… 소득공제혜택 추진.
http://news.donga.com/3/all/20140117/60222601/1#csidx6f1e5845b50073693256d696fd48a84
연합뉴스 (2015/12/23 13:48), <세법시행령> 종교인 세부담, 근로자보다 낮을 듯(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2/0200000000AKR20151222178451002.HTML
연합뉴스 (2017/08/09 18:51),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9/0200000000AKR20170809166700001.HTML
크리스천투데이 (2006. 2006.06.07. 09:00), 종교인은 근로자인가… 납세문제 지면논쟁.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175286/20060607/%EC%A2%85%EA%B5%90%EC%9D%B8%EC%9D%80-%EA%B7%BC%EB%A1%9C%EC%9E%90%EC%9D%B8%EA%B0%80%E2%80%A6-%EB%82%A9%EC%84%B8%EB%AC%B8%EC%A0%9C-%EC%A7%80%EB%A9%B4%EB%85%BC%EC%9F%81.htm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